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3월 1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2962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 표시·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식품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갖출 것
3. 표시·광고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를 취소하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 부과납부기한(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처분의 기간 등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40퍼센트
2. 시·군·구: 60퍼센트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적발일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3조, 제37조제4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을 “기준·규격, 기능성 및 안전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으로 한다.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管)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 특수용도식품(영아·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수유부·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광고
4. 거짓·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
 - 1) 「식품위생법」 제37조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
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광고

마.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인증·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
는 제외한다.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
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의
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광고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
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광고

차.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카.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
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 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광고

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영 제2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별표 2]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3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호의2·제4호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 200 이하	14
3	200 초과 ~ 310 이하	17
4	310 초과 ~ 430 이하	20
5	430 초과 ~ 560 이하	27
6	560 초과 ~ 700 이하	34
7	700 초과 ~ 860 이하	42
8	860 초과 ~ 1,040 이하	51
9	1,040 초과 ~ 1,240 이하	62
10	1,240 초과 ~ 1,460 이하	73
11	1,460 초과 ~ 1,710 이하	86
12	1,710 초과 ~ 2,000 이하	94
13	2,000 초과 ~ 2,300 이하	100
14	2,300 초과 ~ 2,600 이하	106
15	2,600 초과 ~ 3,000 이하	112
16	3,000 초과 ~ 3,400 이하	118
17	3,400 초과 ~ 3,800 이하	124
18	3,800 초과 ~ 4,300 이하	140
19	4,300 초과 ~ 4,800 이하	157
20	4,800 초과 ~ 5,400 이하	176
21	5,400 초과 ~ 6,000 이하	197
22	6,000 초과 ~ 6,700 이하	219
23	6,700 초과 ~ 7,500 이하	245
24	7,500 초과 ~ 8,600 이하	278
25	8,600 초과 ~ 10,000 이하	321
26	10,000 초과 ~ 12,000 이하	380
27	12,000 초과 ~ 15,000 이하	466
28	15,000 초과 ~ 20,000 이하	604
29	20,000 초과 ~ 25,000 이하	777
30	25,000 초과 ~ 30,000 이하	949
31	30,000 초과 ~ 35,000 이하	1,122
32	35,000 초과 ~ 40,000 이하	1,295
33	40,000 초과	1,381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0 이하	5
2	20 초과 ~ 30 이하	8
3	30 초과 ~ 50 이하	10
4	50 초과 ~ 100 이하	13
5	100 초과 ~ 150 이하	16
6	150 초과 ~ 210 이하	23
7	210 초과 ~ 270 이하	31
8	270 초과 ~ 330 이하	39
9	330 초과 ~ 400 이하	47
10	400 초과 ~ 470 이하	56
11	470 초과 ~ 550 이하	66
12	550 초과 ~ 650 이하	78
13	650 초과 ~ 750 이하	88
14	750 초과 ~ 850 이하	94
15	850 초과 ~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 10,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367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 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 200 이하	14
3	200 초과 ~ 300 이하	16
4	300 초과 ~ 400 이하	19
5	400 초과 ~ 500 이하	24
6	500 초과 ~ 650 이하	31
7	650 초과 ~ 800 이하	39
8	800 초과 ~ 950 이하	47
9	950 초과 ~ 1,100 이하	55
10	1,100 초과 ~ 1,300 이하	65
11	1,300 초과 ~ 1,500 이하	76
12	1,500 초과 ~ 1,700 이하	86
13	1,700 초과 ~ 2,000 이하	100
14	2,000 초과 ~ 2,300 이하	106
15	2,300 초과 ~ 2,700 이하	112
16	2,700 초과 ~ 3,100 이하	118
17	3,100 초과 ~ 3,600 이하	124
18	3,600 초과 ~ 4,100 이하	142
19	4,100 초과 ~ 4,700 이하	163
20	4,700 초과 ~ 5,300 이하	185
21	5,300 초과 ~ 6,000 이하	209
22	6,000 초과 ~ 6,700 이하	235
23	6,700 초과 ~ 7,400 이하	261
24	7,400 초과 ~ 8,200 이하	289
25	8,200 초과 ~ 9,000 이하	318
26	9,000 초과 ~ 10,000 이하	351
27	10,000 초과 ~ 11,000 이하	388
28	11,000 초과 ~ 12,000 이하	425
29	12,000 초과 ~ 13,000 이하	462
30	13,000 초과 ~ 15,000 이하	518
31	15,000 초과 ~ 17,000 이하	592
32	17,000 초과 ~ 20,000 이하	684
33	20,000 초과	740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1)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	40	60
3)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 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가)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50	100	150
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에 제품명, 제조업소명(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 또는 생산국) 및 판매업소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	30	60	90
2)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고도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및 심의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제3조 및 별표 1)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사례로서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나 식품 등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등을 정하는 등 영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함.

나.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제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식품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상근 인력 및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함.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6조)

1)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